

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9. 10. 20.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“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”를 “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”로 함 (안 제8조 제1항)

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”를 “정기회의는
매년 1회 개최하고”로 한다.

수정안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조~제7조 “생 략”</p> <p>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<u>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</u>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② “생 략”</p>	<p>제1조~제7조 “원안과 같음”</p> <p>제8조(회의) ① ----- -----<u>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</u>----- -----</p> <p>② “원안과 같음”</p>